

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026. 3. 19.(목)

교육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6. 3. 4.

나. 발 의 자 : 인천광역시교육감

다. 회부일자 : 2026. 3. 6.

라. 상정일자 : 제3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(2026. 3. 19. 상정·의결)

- 제안설명 :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
- 검토보고 : 윤혜순 교육수석전문위원
-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- 상위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불일치 사항 등을 일괄 정비하여, 자치법규의 통일성을 기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함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「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 상위법령 제·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 및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 인천

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6년 3월 6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.

○ 종합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·개정 사항이 적기에 반영되지 않아 구(舊) 법령이나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.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,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
- 다만, 정비 대상 중 「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」, 「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」, 「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」 등 3건은 지난 지난 '2025년도 행정사무감사¹⁾' 시 입법평가 권고사항 미반영 및 이행 지연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,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요구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원안동의

가. 찬성(이용창, 조현영, 정종혁, 임지훈)

나. 반대(없음)

6. 심사결과

- 원안가결(재석의원: 4명, 찬성: 4명)

1) 2025년도 제4차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(2025. 11. 14.)

7. 기타: 해당없음

- 붙임 1. 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
설치·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끝.

【붙임 1】

인천광역시조례 제 호

상위법령 제·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

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제1조(「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제2호 중 “문화체육관광국장”을 “문화체육국장”으로 한다.

제2조(「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“「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」”을 각각 “「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6호 중 “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조제1호”를 “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조제1호”로 한다.

제4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5호 중 “영 제15조제6항”을 “영 제15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5조(「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학교
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「교육기본법」 제5조제2항”을 “「교육기본법」 제5
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6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
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4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0호”를 “「초·
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90조제1항제10호”로 한다.

제7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
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
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청소년기본법」 제3조제8호”를 “「청소년 기본법」
제3조제8호”로 한다.

제8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
화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
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「예술인복지법」 제4조의4”를 “「예술인 복지법」
제4조의4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예술인복지법」 제5조”를
“「예술인 복지법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1호 중 “제2조 제5호”를 “제2조제5호”로 한다.

제9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

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2항 중 “「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4조”를 “「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4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」 제5조”를 “「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10조(「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4항”을 “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6항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9조의 4”를 “법 제19조의4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국가공무원법 제33조”를 “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6항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7항”으로 한다.

제11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「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교육종합계획”을 “「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교육계획”으로 한다.

제12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」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”을 “「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」 제5조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”으로 한다.

제6조 중 “환경부”를 “기후에너지환경부”로 한다.

제13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”을 “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1의2호”를 “「동물보호법」 제2조제9호”로 한다.

제15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9조”를 “제7조”로 한다.

제16조(「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「학교체육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및 제3항”을 “「학교체육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및 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7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법 제3조제1항”을 “법 제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학교보건법 제2조의2”를 “「학교보건법」 제2조의2”로 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”을 “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”로 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학교보건법 제7조의2”를 “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의2”

로 한다.

제19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 단서 중 “「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를 “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”로 한다.

제20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9호 중 “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」 제5조”를 “「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21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초·중등교육법 제2조”를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”로 한다.

제22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여성가족부”를 “성평등가족부”로 한다.

제23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」의

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제4조”를 “제5조”로 한다.

제24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2장”을 “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2장”으로 한다.

제25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1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12”로 한다.

제26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제2항 중 “교동서로978번길 28”을 “교동서로378번길 28”로 한다.

제27조(「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제1호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”를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외국

인투자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7호”를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7호”로 한다.

제29조제4호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18조”를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8조”로 한다.

제30조제4항제5호 중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9조제1항”을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제1항에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제1호가목 중 “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9조”를 “「외국인 투자 촉진법」 제9조”로, “기획재정부장관”을 “재정경제부장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「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”를 “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46조”로 한다.

제37조제4항 중 “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”을 “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3호 중 “국가보훈처장”을 “국가보훈부장관”으로 한다.

제28조(「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”을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제23조제1항 중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88조 및 영 제87조”를 “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

라 한다) 제60조”로 한다.

제29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영 제107조제5항”을 “영 제107조제6항”으로 한다.

제30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”를 “「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6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1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법인등기부등본”을 “법인등기사항증명서”로 한다.

제32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「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”를 “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”로 한다.

제33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

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3”을 “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2조의4”로 한다.

제34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4호 중 “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”을 “「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기획재정부장관”을 각각 “기획예산처장관”으로 한다.

제35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5”를 “「교육기본법」 제17조의6”으로 한다.

제36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4조의 2”를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4조의2”로 한다.

제37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제1항”을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5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중 “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3호”를 “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3호”로 한다.

제38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6호자목 중 “「의료법」 제7조”를 “「간호법」 제4조”로 한다.
제12조제1항 중 “학교현장교육지원단”을 “현장체험학습지원단”으로 한다.

제39조(「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」의 개정)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호 중 “신설”을 “신축”으로, “이설 및 전면 개축”을 “증축(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·개축(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재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신설·이설 및 전면 개축”을 “신축·증축·개축 또는 재축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8조”를 “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9조제1항”을 “「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1항”으

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붙임 2】

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·운영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구성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협의회의 위원은 교육감과 시장이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인천광역시(이하“시”라 한다)의 기획조정실장, <u>문화체육관광국장</u>, 교육협력담당관</p> <p>3. (생략)</p>	<p>제3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<u>문화체육관광</u> <u>장</u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 교권확립현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민국헌법」, 「교육기본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<u>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</u>」 등의 입법취지에 따라 교권확립현장을 마련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교육법규”란 「교육기본법」, 「<u>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</u>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유아교육법」, 「국가공무원법」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정한 법규(그 법규에 따른 지침과 학칙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</p> <p>3. ~ 5.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「<u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</u>」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「<u>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개인정보”란 「<u>개인정보보호법</u>」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.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「<u>개인정보 보호법</u>」 제2조제1호 ----- ----- -----.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)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 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<u>영 제15조제6항</u>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</p> <p>6. ~ 8. (생략)</p>	<p>제5조(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영 제15조제7항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6. ~ 8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”란 「<u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</u>」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.</p> <p>5.·6. (생략)</p>	<p>제3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 「<u>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</u>」 제90조제1항제10호----- -----.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청소년단체”란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<u>청소년기본법</u>」 제3조제8호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
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문화예술용역계약”이란 「예술인복지법」 제4조의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</p> <p>4. “표준계약서”란 「예술인복지법」 제5조,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의3 등에 따라서 국가에서 보급하고 있는 표준적인 계약서 양식을 말한다.</p> <p>5. (생 략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</p> <p>1. 제2조 제5호에 따른 작성 교육의 운영을 위한 업무 관련 장학관 또는 장학사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「예술인 복지법」 제4조의4- -----.</p> <p>4. ----- 「예술인 복지 법」 제5조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· ② (현 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제2조제5호----- ----- -----</p>

2. ~ 6. (생략)

2. ~ 6.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
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3조(총회 의결사항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총회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2항 및 「<u>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」 제4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.</p> <p>③ 학부모회 회장은 총회의 의결 사항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32조 및 「<u>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</u>」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</p> <p>④ · ⑤ (생략)</p>	<p>제13조(총회 의결사항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<u>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4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 「<u>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</u>」 제5조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학교운영위원회 :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특수학교에 설치한 운영위원회와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4항에 따라 해당 학교의 병설유치원과 통합한 운영위원회</p> <p>2. 3. (생략)</p> <p>제8조(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운영위원회는 <u>법 제19조의 4</u>에 따른 심의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·③ (생략)</p> <p>제11조(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) ① (생략)</p> <p>②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「유아교육법」 제19조의3제6항----- ----- --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) ① ----- <u>법 제19조의4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1조(위원의 겸직 및 자격의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

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.

③ (생략)

제13조(임원 및 간사) ① 운영위원회에는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6항 및 「유아교육법시행령」 제22조의5제6항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.

②·③ (생략)

-----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임원 및 간사) ① -----
-----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59조제7항 -----
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5조(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은 「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국가환경교육계획과 「<u>인천광역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</u>」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<u>환경교육종합계획</u>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5조(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「<u>인천광역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</u>」 제4조에 따른 <u>인천광역시 환경교육 계획</u>-----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자원재활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) ①·② (생 략) 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환경 교육 진흥 조례」 제4조의 학교 환경교육 기본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기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</p>	<p>제4조(자원재활용교육 기본계획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「인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 교육 활성화 조례」 제5조의 인 천광역시교육청 생태전환교육 시행계획----- ----- -----.</p>
<p>제6조(분리배출) 학교의 장은 무 색 투명한 PET병의 분리배출 시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배출 하게 하는 등 <u>환경부</u> 「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」 별표 1에 따른 품목별 분리배출 요령을 학생과 교직원 에게 교육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분리배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기후에너지환경부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비용추계서”란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, 위원회 및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원등”이라 한다)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(이하 “비용”이라 한다)에 관하여 추계(이하 “비용추계”라 한다)한 자료를 말한다.</p> <p>2.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2. 3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동물학대”란 「<u>동물보호법</u>」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「<u>동물보호법</u>」 제2조제9호----- -----.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) <u>제9조</u>의 센터 및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~ 6. (생략)</p>	<p>제8조(센터 및 지역센터의 업무) <u>제7조</u>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“학교 체육시설”이란 「학교 체육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학교 설립·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이라 한다)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.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「학교 체육 진흥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 및 제5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민관협력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조(계획 수립)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<u>법 제3조제1항</u> 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4조(계획 수립) ----- ----- ----- <u>법 제3조제2항</u> ----- ----- -----

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학교보건법 제2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)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·증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교직원”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, 지방공무원, <u>「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</u></p> <p>3. 4. (생 략)</p> <p>제3조(직무) 자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(이하 “교육감” 이라 한다)의 자문에 응한다.</p> <p>1. <u>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학교보건법</u>」 제2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<u>「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</u> -----.</p> <p>3.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직무)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「학교보건법」 제7조의2--</u></p>

<p>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</p> <p>2. ~ 5.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</p> <p>2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정보공개 대상)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8. (생략)</p> <p>9. 「<u>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</p> <p>10. (생략)</p>	<p>제6조(정보공개 대상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9. 「<u>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5조----- -----</p> <p>10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협력체계 구축)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경찰청, 검찰청, 교육부, <u>여성가족부</u> , 인천광역시 등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	제9조(협력체계 구축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성평등가족부</u> ----- ----- -----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사무위탁) ① 교육감은 <u>제4</u>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기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9조(사무위탁) ① ----- <u>제5</u>조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」 제2장의 본청에 설치된 위원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① ----- 「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」 제2장-----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초·중 등교육법</u>」 제60조의11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의 통학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초·중 등교육법</u>」 제60조의1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4조(설치) ① (생략) ② 인천난정평화교육원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 <u>교동서로 978번길 28</u> 에 둔다.	제44조(설치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<u>교동서로 378번길 28</u> -----.

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
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
산

5.·6. (생략)

제30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
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
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
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
한다.

1. ~ 4. (생략)

5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
조치법」 제19조제1항 따라
벤처기업전용단지, 벤처기업
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
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
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
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
치자가 대부하는 경우

6. ~ 10. (생략)

⑤·⑥ (생략)

제34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
면) ①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
제13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
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
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

조-----

--

5.·6.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대부료의 요율) ① ~ ③
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
법」 제19조제1항에 -----

6. ~ 10. (현행과 같음)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34조(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
면) ① -----

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
부료 또는 사용료(이하 “대부료
등”이라 한다)의 감면율은 다음
각 호와 같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
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
전액 감면할 수 있다.

가. 「외국인투자촉진법」 제9
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
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
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
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
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
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
업

나. ~ 사. (생략)

2. 3. (생략)

② (생략)

③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
「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
한 특별법」 제46조 및 같은 법
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
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
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. (생략)

④ ~ ⑦ (생략)

-----.

1. -----

-----.

가.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
9조-----
----- 재정
경제부장관-----

나. ~ 사. (현행과 같음)

2. 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
관한 특별법」 제46조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
<p>제37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「<u>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</u>」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제3항에 따른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37조(대부료 등의 납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-- 「<u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</u>」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0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서 “조례로 정하는 경우”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교육감이 건립한 아파트, 연립주택,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<u>국가보훈처장</u>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</p> <p>4. ~ 7. (생략)</p>	<p>제40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--- <u>국가보훈부장관</u>----- ----- -----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 ① · ② (생 략) ③ 위원의 제척 · 기피 · 회피에 대해서는 <u>영 제107조제5항</u> 을 적 용한다. ④ (생 략)	제5조(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영 제107조제6항</u> ----- ----- ④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녹색제품”이란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66조제4항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
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2. (생략)</p> <p>3. “지역산업자”(이하 “지역업자”라 한다)라 함은 법인인 경우 <u>법인등기부등본</u>,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의 관할 구역으로 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</p> <p>4. 5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 ----- -- <u>법인등기사항증명서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“예비사회적기업”이란 제1호의 ‘사회적기업’으로 인증 받지 않았으나, 사회서비스의 제공,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「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.</p> <p>3. ~ 6. (생 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3. ~ 6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
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중증장애 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」 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<u>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」 제22조의3</u> 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 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<u>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」 제22조의4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
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3조(준용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영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따른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“<u>「공용차량관리규정」 제4조 및 별표 1</u>에 따른 전용차량배정자”는 “<u>「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 차량 관리 규칙」 별표의 전용차량배정자</u>”로 본다.</p> <p>5.·6. (생략)</p> <p>7.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“<u>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</u>”와 같은 조 제2항 중 “<u>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</u>”는 없는 것으로 보며,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.</p> <p>8. (생략)</p>	<p>제3조(준용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 <u>「공무원 차량 관리 규정」 제4조 및 별표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5.·6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----- ----- <u>기획예산처 장관</u>----- ----- <u>기획예산처장관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8. (현행과 같음)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수상안전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 및 제4조의 2에 따라 학교 안팎의 수상안전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실질적인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상안전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</u>」 제4조 및 제4조의2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

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저소득층 학생”이란 인천광역시 학생 중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4제1항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.</p> <p>2.·3. (생략)</p> <p>4. “사이버 음란물”이란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 및 「청소년보호법」 제2조제3호에서 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한다.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5제1항----- -----.</p> <p>2.·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 ----- ----- ----- 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3호----- -----.</p>

인천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6. “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”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전문기관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(이하 “안전요원”이라 한다)을 말한다.</p> <p>가. ~ 아. (생략)</p> <p>자. 「의료법」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</p> <p>차. (생략)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</p> <p>자. 「간호법」 제4조----- ----- -----</p> <p>차. (현행과 같음)</p> <p>7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2조(현장체험학습지원단 설치·운영) ① 교육감은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위하여 <u>학교현장교육지원단</u>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	<p>제12조(현장체험학습지원단 설치·운영) ① ----- ----- ----- <u>현장체험학습지원단</u>----- -----.</p>

② (생 략)

② (현행과 같음)

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<u>신설</u>(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)·<u>이설</u> 및 <u>전면 개축</u>하는 공공건축물</p> <p>2. 교육감의 지도·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<u>신설·이설</u> 및 <u>전면 개축</u>하는 공공건축물</p> <p>3. (생략)</p> <p>제4조(인증기준) 인증기준은 「<u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</u></p>	<p>제3조(적용범위)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-----</p> <p><u>신축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증축</u>(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·<u>개축</u>(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. 이하 같다) 또는 <u>재축</u>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 <u>신축·증축·개축</u> 또는 <u>재축</u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인증기준) ----- 「<u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</u></p>

<p><u>한 규칙」 제8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.</u></p> <p>제6조(인증취득 지원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「<u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9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<u>한 규칙」 제5조-----</u> -----.</p> <p>제6조(인증취득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「<u>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」 제6조제1항-----</u> -----.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